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 2440)

2025. 02. 27.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강석주 의원 발의]

의안번호 2440

I. 조례안 개요

1. 제안경위

- 가. 제안자 : 강석주 의원 (찬성 26인)
나. 제안일자 : 2025년 02월 03일
다. 회부일자 : 2025년 02월 06일

2.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은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는 시장의 지정으로 의회의 추천을 배제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여 의회의 권한을 회복하고 법률 적합성의 원칙을 준수하고자 함.
- 또한, 동일한 의미의 용어를 다르게 표기하고 있어 통일된 용어로 정비하여 법률 체계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회계감사를 실시할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은 시의회의 추천을 받도록 함(안 제8조제4항)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1 개정안의 취지

-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사회복지시설이 회계감사 실시 시, 시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한 것을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과 일치시켜 지방의회(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이 회계감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 체계와 일치시키고, 용어의 정비 등을 통해 법률의 체계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됨.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검토

가. 개정내용의 검토 및 적용범위

- 법 제34조¹⁾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6. 2. 3., 2017. 10. 24.>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2019. 1. 15.>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는 법인, 단체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민간위탁 운영시설 포함)과 그 외의 자가 운영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의 경우 이 두 가지 운영주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회계감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본 개정안은 시장이 본 조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시설²⁾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할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에 대해 지방의회(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지도·감독 등) ④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이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u>시장이 지정한</u>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의한 회계	제8조(지도·감독 등) ④ ----- ----- ----- <u>시의회</u> 의 추천을 받은 ----- ----- ----- ----- -----

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1.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하는 노인·장애인·여성·아동복지 관련 시설, 사회복지관과 노숙인시설 등을 말한다.

현행	개정안
<p>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u>하여야 한다</u>. 이 경우 회계감사 실시 <u>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u>이 따로 정한다.</p>	<p>----- ----- ---- <u>할 수 있다</u>. ----- ----- <u>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시장</u>-----.</p>

- 법에서는 보건복지부령³⁾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지방의회에서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조례상의 회계감사 실시절차에서 감사인의 선정을 ‘시장의 지정’에서 ‘시의회 추천’으로 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의 추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시에서 민간위탁 사무를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회계감사는 매년 실시되고 있는 반면, 관련 법령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 실시하는 회계감사는 보건복지부령에서 규정된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3)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2조의 2(회계감사)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인 및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4.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42조제4항에 따라 감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 경우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의 추천 등 회계감사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본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42조의2에서 규정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시장이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게 함으로써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나. 기타 : 조문 정비 (안 제7조 및 제8조)

- 본 개정안에서는 법제처에서 발간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권고하는 대로 제7조에서 사용하는 자(者)를 사람으로 수정하여 법률용어를 정비하였음.
- 또한, 제8조에서는 수탁기관을 수탁자로 수정해 용어의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쟁점사항은 없음.

〈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수탁자 선정) ①·② (생략)	③ 선정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자</u>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7조(수탁자 선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사람</u> ----- ----- ----- -----.
1. (생략)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u>자</u>	1. (현행과 같음)	2.	----- ----- <u>사람</u>

현행	개정안
<p>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u>자</u></p> <p>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u>자</u>. 다만, 위탁신청자와 관련하여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p> <p>④·⑤ (생략)</p> <p>⑥ 선정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u>범위 안에서</u>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8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u>수탁기관</u>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지도·감독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u>수탁기</u></p>	<p>3. ----- <u>사람</u></p> <p>4. ----- ----- ----- <u>사람</u>. ----- ----- -----.</p> <p>④·⑤ (현행과 같음)</p> <p>⑥ ----- ----- <u>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u> ----- -----. -----.</p> <p>제8조(지도·감독 등) ① ----- <u>수탁자</u>----- ----- ----- ----- ----- -----.</p> <p>② ----- ----- ----- <u>수탁자</u></p>

현행	개정안
<p>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u>수탁기관</u>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④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이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u>시장이</u> 지정한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u>하여야 한다</u>. 이 경우 회계감사 실시에 필요한 <u>사항은 시장이</u> 따로 정한다.</p> <p>⑤ (생략)</p> <p>제9조(임원의 해임명령) ① (생략)</p>	<p>----- -----.</p> <p>③ ----- ----- ----- <u>수탁자</u> ----- ----- -----.</p> <p>④ ----- ----- ----- <u>시의회의 추천을</u> ----- <u>받은</u> ----- ----- ----- ----- ----- 할 <u>수 있다</u>. ----- ----- <u>사항은 「사회복지</u> <u>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u> <u>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시장</u> -----.</p> <p>⑤ (현행과 같음)</p> <p>제9조(임원의 해임명령) (현행 제1항과 같음)</p>

다. 부서의견 : 원안가결

-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회계감사인의 추천 주체를 시의회로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시장이 적용사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의 입장임

3 종합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 법 및 보건복지부령에서 지정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 지방의회(서울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감사인이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상위법과의 체계를 맞추고자 조문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며,
- 또한, 회계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2조의2에 따라야 함을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